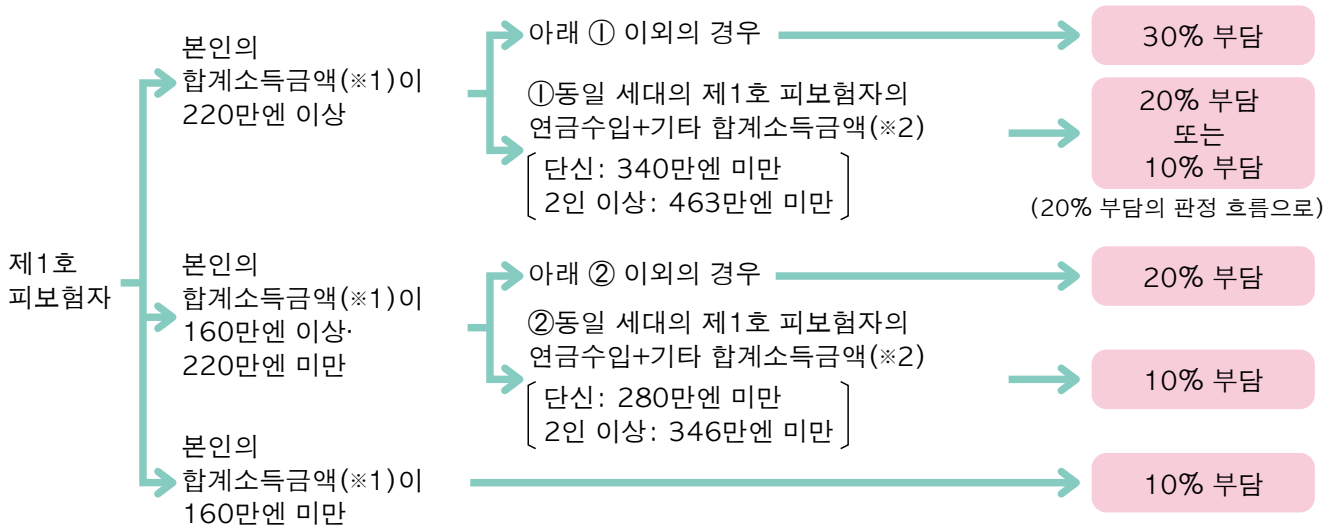


개호서비스의 이용자 부담

◆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90% 또는 80%가 개호보험에서 지급되고, 나머지 10% 또는 20%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 또, 2018년 8월부터 20% 부담자 가운데 특히 소득이 높은 분은 이용자 부담이 30%가 됩니다(아래 그림 참조). 단, 거택개호지원, 개호예방지원에는 이용자 부담이 없습니다.



※ 1 : 합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8 페이지 ※ 2 (1) (2) 참조.

※ 2 : 기타 합계소득금액이란, 합계소득금액에서 연금수입에 관련되는 소득 (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에서 공적연금 등 공제액을 공제한 잔액)을 공제한 금액.

〈재택서비스를 받는 경우의 지급한도기준액〉

◆재택서비스의 경우 요개호도별로 개호보험에서 금부를 받을 수 있는 상한 (지급한도기준액)이 정해져 있습니다 (오른쪽 표 참조).

주 : 실제의 상한 (지급한도기준액)은 단위 수로 정해져 있습니다. 1 단위당 단가는 지역이나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, 오른쪽 표에서는 기준으로서 1 단위당 10 엔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.

◆상한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상한 초과분 전액이 자기부담이 됩니다.

요개호도	보험에서 금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 (1개월당 · 기준)
요지원 1	50,030 엔
요지원 2	104,730 엔
요개호 1	166,920 엔
요개호 2	196,160 엔
요개호 3	269,310 엔
요개호 4	308,060 엔
요개호 5	360,650 엔